

##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와 정책과제\*

### -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Korea's Anti-Money Laundering System and Policy Agenda :  
Some Suggestions to Enhance the Roles of Financial Institutions for  
Anti-Money Laundering

함정호(Hahm, Jeong-Ho)\*\* , 김두환(Kim, Doohwan)\*\*\*

#### ABSTRACT

Money laundering is defined as the process of disguising the criminal proceeds from the prerequisite crimes such as narcotics, smuggling, bribery as the legitimate profits. This kind of money laundering is increasingly rising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interna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promoted by the fast globalization and integration of the world economy.

Such legitimately transformed criminal profits can be used as sources of various other organized crimes. In this context, control of money laundering crimes is considered as one of very effective tools to prevent the expansion of various other crimes.

In order to prevent money laundering crimes, each country should put more efforts to prepare laws and regulations for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cooperate closely with each other.

In this study, we, first, clarify the concept and effect of money laundering, and then discuss the roles and efforts of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stablished to prevent money laundering. In addition, we examine our country's laws and regulations to control money laundering crimes, and then analyze the roles and issues of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themselves perform money laundering control tasks at the front line. Finally, some suggestions to enhance the roles of financial institutions for anti-money laundering are discussed.

Key words: Money Laundering, Anti-Money Laundering System, Financial Institutions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1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본 논문의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제1저자: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박사과정

## I. 서론

21세기는 세계화의 가속으로 인해 세계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이 빠르게 통합되면서 경제활동과 금융거래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세계경제가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으로 구성되는 단일경제체제가 되면서 금융환경도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통합화로 인해 국가 간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에 비례하여 금융거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거래를 이용한 각종 경제범죄의 행태나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약, 불법무기, 테러 등의 조직범죄들은 국경을 초월한 국제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조직범죄자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합법자금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세탁 범죄는 금융거래 규모의 확대와 다양성에 편승하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초국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범죄활동으로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이 자금세탁을 거쳐 합법적 자금으로 전환된 후 이것이 또 다른 범죄의 원천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범죄의 방지는 경제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의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뇌물, 마약, 테러 등 각종 범죄와 관련된 불법자금의 자금세탁으로 부정부패가 사회전반에 확산되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와 금융질서가 교란되는 가운데 국가경제정책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자국의 법제 제정 및 해당기구 설립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자금세탁범죄 방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OECD의 자금세탁 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아태지역 자금세탁 방지기구인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등을 설립하여 자금세탁범죄의 방지를 위한 각국 간 정보교환 및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기구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하여 자금세탁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sup>1)</sup> 우리나라는 또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여러 국제기구에도 가입하여 이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정립하였다. 1998년 아태 지역 자금세탁 방지기구(APG) 가입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에그몽 그룹의 정회원이 되었으며, 2002년부터 2년간 APG 의장국

1) 금융정보분석원(2011) “자금세탁방지 2010년도 연차보고서”.

을 역임하면서 APG 총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고객확인제도, 2008년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그리고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금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자금세탁방지제도 측면에서 한국은 어느 정도 국제적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2008년 아시아 최초로 에그몽 그룹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2009년에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는 OECD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인 FATF에 가입하였고, 2011년 12월 ‘자금세탁방지 부산 국제회의(FATF/APG Joint Typologies Workshop 2011)’를 개최하였다. 이제 한국은 제도이행 미흡 국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초청연수 실시 등 자금세탁방지 선도국가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자금세탁관련 기본법체제를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을 설립함으로써 여러 국제기구는 물론 주요 선진국들과의 국제적 공조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은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 금융기관과 법집행기관 간의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양적인 측면에서 자금세탁방지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는 겨우 마련되었으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질적인 측면에서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따라서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자금세탁의 개념과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역할노력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제와 기구를 간략히 살펴보고, 자금세탁방지관련 중요 업무를 일선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자금세탁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거래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한 인식을 완전 전환하여 이를 전사적인 조직차원에서 통괄관리하고, 선진화된 금융정보화시스템에 기반을 둔 완벽한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가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적 거래의 징후를 찾아내고,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시스템의 처리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전문 심사분석관의 전략적 심사분석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금융기관과 금융정보분석원 간에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II장에서 자금세탁에 대한 선행연구의 특징을 간략하게 개관한다. 제III장에서는 먼저 자금세탁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자금세탁 범죄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과 자금세탁 규제 필요성을 논의한다. 제IV장에서는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역할과 노력을 논의한다. 제V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법규 및 제도와 기구를 살펴보고,

제VI장에서 일선에서 금융거래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역할과 과제를 차례로 분석한다. 다음 제VII장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제VIII장에서 요약과 결론을 정리한다.

## II. 선행연구 개관

지금까지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요 선행 연구들의 중요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안형도·윤덕용(2003)은 먼저 국제금융거래 변화의 전반적 추세를 살펴보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자금세탁 증가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유형과 수법을 분석하여 그에 관련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강화, 고객주의의무 시행, 관세청 직원의 역할제고, 국가 간 협조체제 구축 등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관세청(2003)은 자금세탁의 정의와 수법, 유형,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관련 주요 법률인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법」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동규(2003), 하춘호(2005) 등은 특히 자금세탁수법인 환치기를 중심으로 환치기의 개념, 환치기 실태와 사례, 환치기 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김두현(2008)은 주로 국제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각국의 정책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방지 대책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조성길(2008)은 국제 자금세탁방지 기구들의 역할과 활동상황을 살펴보고, 각자의 현재 역할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제기구 간 공동의 평면이 존재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협력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또한 각기 자국의 금융환경을 반영한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김만석(2010)은 특히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에 대해 주로 연구하였다. 불법 금융거래에는 반드시 거래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업무를 담당하는 주체인 금융기관이 사전에 불법거래의 가능성이 농후한 개인이나 법인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면 자금세탁 범죄를 원천봉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고객의 위험등급을 관리하는 고객확인제도, 요주의고객 필터링, 규칙기반 시스템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위험요인을 추출하고 거래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의심거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김철수(2011) 역시 무역기반 자금세탁의 다양한 수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는 이와 같은 무역에 기반을 둔 자금세탁관련 불법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출입 거래와 가장 관련성이 깊은 관세청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III. 자금세탁의 개념 및 유형과 영향

#### 1. 자금세탁의 개념과 유형

##### 1) 자금세탁의 개념

자금세탁(Money Laundering)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1920년대 미국 시카고의 조직범죄자 알 카포네(Al Capone)가 도박과 불법 주류 판매로 얻은 불법수익금을 현금수익이 많은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합법수익금으로 전환한 사건에서 유래되었다<sup>2)</sup>. 그러다가 1970년 미국의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이 제정되면서 ‘자금세탁’이 법적 공식용어가 되었으며, 1985년 미국의 ‘조직범죄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에서 ‘수입의 존재, 위법한 출처 또는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고 그 수입을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자금세탁’의 개념적 정의를 내렸다.<sup>3)</sup> 1986년에는 미국의 「자금세탁규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이 제정되면서 남미로부터 밀반입된 마약류 판매로 벌어들인 불법자금의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한 바 있다.<sup>4)</sup>

미국의 자금세탁규제법은 1988년 UN의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인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과 1990년 일명 자금세탁 협약이라는 ‘범죄수익의 세탁, 수색, 압수 및 몰수에 관한 유럽이사회 협약(the Convention on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Proceeds from Crime)’ 등 국제협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각국의 자금세탁방지법안의 근거가 되었다. 동 UN 협약에 의하면 자금세탁은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 당해 자산의 출처를 은닉하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게 도울 목적으로 해당

2) David A. Chaikin(1991), "Money Laundering: An Investigatory Perspective", Criminal law forum vol. 2. No 3.

3) 법무부(200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법무부.

4) 김두현(2008), 『국제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자산을 전환 또는 양도하는 행위, (2) 당해 자산의 성질·출처·소재·처분·이동·권리·소유권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 (3) 당해 자산을 취득·소지·사용하는 행위' 중 하나로 정의된다.<sup>5)</sup>

각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의 개념을 살펴보면, 미국은 '특정불법행위의 수익을 조정하거나 이에 대한 소유권, 출처, 소재, 본질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거래행위, 주범이나 연방법에 의한 보고 의무사항을 피하는 행위, 탈세행위의 의도를 가진 금융거래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불법적인 원천의 자금이 경제에 도입되어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일본은 '범죄자가 마약거래 등을 통하여 취득한 부정자금에 대하여 계좌이체로 자금의 지불이나 이전을 통하여 자금 출처 및 수익자를 은폐하거나 보호예수로 은행에 보관할 목적으로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당해 자금을 세탁하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초기 독일 국회에 제출된 형법 제261조에 따르면, '조직범죄로부터 유래되는 재산을 위장할 목적으로 합법적인 경제순환과정으로 유입시키는 것'으로 자금세탁을 규정한 바 있으나, 현재 자금세탁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규정은 없으며, 자금세탁범죄행위의 형태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포괄적인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하면, '불법재산의 취득·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sup>6)</sup> 참고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행위를 보면, (1)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2)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동 법률 제2조 제1호), (3)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소재·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닉 또는 가장하는 행위(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 (4) 탈세를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 제4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sup>7)</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세탁은 각 국가에서 제정된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자금세탁의 금융적 측면, 즉 불법 자산을 합법 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범죄자들이 궁극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자금세탁을 '범죄자가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불법재산을 합법재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혹은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금융기관을 이용해 위법한 출처를 숨기고 적법한 수입으로 가장하

5) 금융정보분석원(2011) "자금세탁방지 2010년도 연차보고서".

6) 금융정보분석원(2011) "자금세탁방지 2010년도 연차보고서".

7) 관세청(2003),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 해설 및 사례", 금융정보분석원(2011) "자금세탁방지 2010년도 연차보고서".

는 일련의 과정'으로 규정한다.<sup>8)</sup>

이러한 자금세탁범죄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9)</sup>

첫째, 자금세탁은 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융 및 무역거래를 이용하여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국경 없는 경제범죄'이다. 따라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하다.

둘째, 자금세탁범죄는 대규모의 기업범죄, 환경범죄, 약물범죄 등과 같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죄로서, 적발이 어렵고, 불법 자산의 환수도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셋째, 자금세탁범죄는 자금의 실질 소유주가 직접 혹은 단독으로 자금세탁을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고 자금세탁 전문조직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직범죄단체는 마약밀매, 무기밀매, 장기불법거래, 인신 매매 등 불법적인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며, 체포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엄격한 내부규율, 공무원매수 및 보복살상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자금세탁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되며, 그 방법이나 수단도 계속적으로 진화되어 기존의 법 개념에서는 처벌 및 규제의 어려움이 있다.

넷째, 자금세탁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직업상 위치를 이용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화이트칼라계층이 범죄에 가담하기 때문에 발견이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불법자산을 합법화하는 자금세탁범죄는 불법수익을 발생시키는 전제범죄<sup>10)</sup>를 기반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합법화된 불법자산은 또다시 재범죄에 이용된다는 특성이 있다.

여섯째, 자금세탁은 연속적,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불법자금을 합법자금으로 전환하는 자금세탁과정은 배치, 반복, 통합단계라는 3단계 과정을 통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미국 관세청 3단계 모델에 의하면, 배치단계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자산을 금융기관 등에 유입시키는 단계, 반복단계는 금융기관에 유입된 불법자산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은폐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거래를 반복하는 단계, 통합단계는 반복단계를 거쳐 합법적 자산의 외관을 가지게 된 불법자금을 정상적 경제활동에 통합시키는 단계로 구분된다.<sup>11)</sup>

8) 관세청(2008), "자금세탁 단속 매뉴얼".

9) 김철수(2011), 『우리나라 무역기반 자금세탁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전제범죄(predicate offences)란 그 범죄의 결과로써 불법수익이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전제범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자금을 합법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바로 자금세탁이다.

11) 금융정보분석원(2008),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자금세탁유형」.

## 2) 자금세탁의 유형

자금세탁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짓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는 자금세탁범죄자들이 자금세탁 수법들을 다양하게 혼용하여 사용하거나 계속적으로 새로운 수법들을 만들어 내고 있을 뿐 아니라 각국의 경제활동 상황, 금융제도, 지급결제관행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sup>12)</sup>. 아래에서는 FATF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시스템을 통한 자금세탁, 현금 밀수입(cash smuggling)을 통한 자금세탁, 사업체 또는 역외국가를 이용한 조직적 자금세탁, 비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국제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으로 구분하여 자금세탁의 유형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sup>13)</sup>

첫째, 수표나 은행을 통한 송금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수법으로서 여기에는 제3자 명의 계좌(차명계좌) 이용 수법, 소액분산입금(Structuring) 수법<sup>14)</sup>, 은행어음 이용 수법, 담보대출 이용 수법<sup>15)</sup>, 파생금융상품 이용 수법, 전자화폐 이용 수법<sup>16)</sup> 등이 있다.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수법은 과거에는 재산의 진정한 소유관계를 감추기 위한 반복단계에서 주로 이용되었으나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제3자가 불법자금을 예금하는 것처럼 배치단계에서부터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 은행 외에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을 통한 파생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선물거래 및 옵션 등 파생금융거래를 이용한 불법자금의 이전 및 자금세탁의 수법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배치단계를 마친 불법자금의 반복, 통합단계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전자화폐는 자금세탁의 배치단계에서는 불법자금은 e-cash 와 같이 익명성이 보장된 전자화폐로 교환하고, 그 전자화폐로 외국화폐나 상품 등을 구입한다.

둘째, 현금 밀수입은 자금세탁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법으로서, 현금을 해외로 수출입하고자 할 경우 세관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피하기 위하여 국내 불법자금을 자기앞수표 등 은닉이 용이한 형태로 전환한 후 밀수출하거나 소액으로 분할하여

12) 기존의 자금세탁방식은 주로 거액 현금 입출금의 전이와 은닉이었으나, 최근에는 주식, 선물, 옵션시장 등의 파생상품시장의 이용, 무역거래, 보험계약의 구매 후 환매, 제3자의 이용 등 새로운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13) 장준오(1999)는 자금세탁 행위를 행하는 주체에 따라 자금세탁자 자신에 의한 자금세탁, 자금세탁자와 금융기관의 연계에 의한 자금세탁, 자금세탁자와 제3자와의 연계에 의한 자금세탁, 자금세탁자와 금융기관과 제3자와의 연계에 의한 자금세탁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안형도(2003)는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과 무역 등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으로 구분하였다.

14) 소액분산입금은 일정금액 이상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 인출,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당국에 해당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고서제출의무대상금액 이하의 소액으로 다수인에게 분산시켜 그들로 하여금 수개의 금융기관 또는 지점에서 입금하거나 다른 지급수단으로 교환하게 하는 자금세탁 수법이다.

15) 역외금융국가 등에 입금된 불법자금을 담보로 국내에서 동일 금액의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된 불법자금으로 상환함으로써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합법화하는 자금세탁 수법.

16) 최근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전자결제 수단의 발전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금융거래, 전자화폐를 이용한 지급 등의 자금이전이 가능하므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자금세탁이 새로운 수법으로 등장하였다.

반출한 후 이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관 등에 해외에서 취득한 정당한 소득으로 신고하고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불법자금에 대한 합법적인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전위기업(Front Company), 위장기업(Shell Company), 역외국가(Offshore Jurisdiction), 조세피난처(Tax Havens)<sup>17)</sup>를 이용하는 수법이다. 전위기업은 배치, 반복 및 통합단계 등 모든 자금세탁 단계에서 이용되며, 보석상, 여행사, 수출입상, 보험회사, 주류판매점, 식당, 골동품점 등과 같이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사업이 활용된다. 전위기업을 통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공모자 없이도 자금세탁이 가능해지며,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게 된다. 위장기업은 자금세탁 단계 중 반복 단계에서 이용되며, 자금세탁자는 위장기업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신분 노출 없이 불법자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게 된다. 역외국가는 역외금융센터를 갖고 있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불법자금의 물리적인 운반,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대체송금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역외국가에 설립된 위장기업의 계좌에 송금하는 수법이다. 역외금융센터의 특성상 자금세탁자는 기업비밀과 금융비밀의 2가지 보호막에 의하여 신분비밀을 보장받게 되고, 나아가 변호사에게 기업설립을 위임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비밀준수의무에 의하여도 보호를 받게 된다. OECD는 케이맨 군도를 포함한 자금흐름이 불투명한 30여개 국가와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지정했는데, 조세피난처에서는 세금이 전혀 없거나 아주 적은 조세제도 및 금융거래 비밀보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최적지이다.

넷째, 비금융기관으로서 대체송금시스템(Alternative Remittance System)<sup>18)</sup>, 부동산 거래, 보험회사, 카지노 등을 이용하는 수법이다. 대체송금시스템은 자금의 물리적 이동 없이 가치를 국가 간에 이전해 주는 것으로, 공식적 금융기관과는 달리 의뢰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금융거래의 기록도 남기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되고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될 염려가 없다는 점에서 자금세탁에 이용된다.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구매 시 불법자금인 현금으로 지급한 후 다시 파는 수법으로 차액을 자금 세탁한다. 보험회사를 이용한 수법으로는 불법자금인 현금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일정기간 입금한 후, 보험계약을 해지하므로 계약금액을 자금 세탁한다. 카지노는 사업상 현금거래를 수반하므로, 불법자금인 현금으로 칩을 구입한 후, 실제 도박은 하지 않고 다시 칩을 수표로 받아 자금 세탁한다.

다섯째, 무역기반 자금세탁은 2006년 FATF의 보고서에서 '불법자금의 원천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거래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가장하거나 이동시키는 일련의 절차'라고 개념정의가 되었는데, 이는 국제무역거래를 통해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중복 인보이싱(Multiple Invoicing of Goods), 수출입물량 조작, 수출입품명 조작,

17) 1998년 OECD는 무세금이거나 명목상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법 적용상의 투명성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정부기관과 정보공유가 제한된 곳을 조세피난처로 판정하였다.

18) 대체송금시스템이란 지하금융시스템으로도 불리며,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도금융권 밖에서 외국에 송금을 해주는 영업활동을 한다.

수출채권 미회수 및 선적선 지급 등을 이용하는 수법이다.<sup>19)</sup>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은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인보이싱<sup>20)</sup>함으로써 국가 간에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조작하여 수출입자들이 차액을 남기는 고전적 수법이다. 중복 인보이싱은 한 번의 무역거래에 두 번 이상 송품장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한 건의 선적에 대해 중복해서 수출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다. 수출입물량 조작은 선적하는 물품의 수량을 조작하는 수법이며, 수출입품명 조작은 수출입품의 질이나 품명을 조작하는 수법이다. 수출채권 미회수 및 선적선 지급은 수출채권을 미회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국외로 이전하는 수법으로, 수출업자는 동 채권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다.

### 3) 자금세탁의 규모와 국제적 추세

자금세탁은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자금세탁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수사자료나 재판자료 등 법집행기관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하여 규모를 산정하는 미시적 방법론과 통화자료나 납세자료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규모를 산정하는 거시적 방법론을 이용하고 있으나, 정확한 자금세탁규모의 산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자금세탁규모를 추정할 몇 가지 예를 살펴보면, 먼저 1987년 UN 보고서는 연간 생산되는 마약 생산량 추정을 통해 세계적 자금세탁 규모를 약 3천억 달러로 추정한 바 있다. 파이낸셜 타임(Financial Times)지는 1994년 전세계 국민총생산의 2%인 5천억 달러가 자금세탁규모라고 추정한 바 있다.<sup>21)</sup> 1998년 국제통화기금에서는 FATF 연례총회 때 전세계 국민총생산의 2-5%가 자금세탁규모라고 밝혔으며, 2001년 아시아개발은행 연례포럼에서 APG는 전세계 자금세탁규모는 총 1조 달러이고, 그 중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만 2-3천억 달러의 자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역시 2001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APG 연례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연간 1조 달러로 추정되는 자금세탁이 일어난다고 발표했다.

1998년 존 워커<sup>22)</sup>가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전 세계 자금세탁규모는 연간 2조 8,500억 달러이고 이중 1조 3,2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세탁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적 추정에 의한 자금세탁규모 관련 자료는 별로 없다. 앞에서 언급한 존 워커(1998)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자금세탁규모의 0.7%에 해당되

19) 김두현(2008), 『국제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송품장(Invoice)에 기재되는 상품의 단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

21) 안형도 외(2000), 「금융정보기구제도 도입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분석 00-04.

22) John Walker(1998), "Modelling Global Money Laundering Flows", <http://www.johnwalkercrimetrendsanalysis.com.au>.

는 212억 4,000만 달러(약 23조 4,000만 원)로서 세계 13위로 추정했다. 그리고 1999년 장준오<sup>23)</sup>는 연쇄비율방법으로 약 35~104조 원 사이로 추정했다. 이 정도의 추정액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태국처럼 자금세탁장소 선호성 중위권에 있는 국가와 같은 수준이며,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자금세탁 청정국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1990년 OECD의 FATF 40개 권고안이 채택된 이후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방지 효과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자들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자금세탁의 국제적 추세를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24)</sup> 첫째, 전문직에 의한 자금세탁이 증가하고 있다. 변호사, 공증인, 기타 독립적 법률전문직 및 회계사, 신탁 및 회사서비스 제공인 등의 전문직들은 자신의 전문성, 합법적 신분 및 지명도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대행, 범죄수익 유통과정의 관여, 금융관련 자문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세탁에 관여한다.

둘째, 비은행권을 통한 돈세탁이 증가하고 있다. 자금세탁자들은 금융권의 규제 강화로 인해 보험회사, 환전, 증권회사 등과 같은 비은행권 기관과 카지노, 여행사, 보석상 등과 같은 현금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셋째, 자금세탁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전신송금·현금분할거래·가명계좌 등의 기존의 수법에서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수법, 스마트 카드나 전자화폐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거래 방법을 이용한 수법, 금을 이용한 수법, 무역을 이용한 수법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수법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금융기법 선진화에 따른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한 복잡한 수법들도 발생하고 있다.

넷째, 자금세탁 관련 범죄가 확대되고 있다. 조직범죄나 마약범죄조직에 의한 자금세탁에서 테러자금조달, 부정부패, 뇌물, 재산도피, 각종 사기, 카지노 도박, 탈세 등의 범죄로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특히 최근 들어 테러방지를 위한 자금세탁규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테러자금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테러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모집, 전달, 사용 등의 동향을 금융기관을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 2. 자금세탁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의 필요성

### 1) 자금세탁의 사회경제적 영향

자금세탁 행위가 규제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부담하게 되

23) 장준오(1999), “90년대 돈세탁: 국제적 추세와 국내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4) 김두현(2008), 『국제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는 잠재적 비용은 막대하다. 각종 중대범죄로부터 취득한 불법자금의 세탁은 사회질서와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 다시 범죄활동자금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금세탁범죄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자금세탁 범죄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각종 중대범죄와 관련된 불법자금의 자금세탁으로 인해 부정부패가 사회전반으로 확산되면 사회기본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범죄자들은 범죄사실을 은폐 및 축소하고 새로운 범죄를 도모하기 위해 공직자, 정치인 및 각종 비호세력들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매수된 자들은 범죄자들의 범죄를 묵인하거나 공생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범죄자들과 결탁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결속력이 떨어지고 사회윤리기준이 약화되며 사회 전체가 부조리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둘째, 자금세탁 범죄에 따른 오염효과는 신용사회의 합법적인 거래를 크게 저해한다. 어떤 거래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오염효과로 인해 특정국가의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며, 내부거래·사기·횡령 등으로 시장 신뢰가 손상되면 높은 이윤도 더 이상 효율성의 신호가 될 수 없다.

셋째, 자금세탁은 국가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큰 혼란을 야기한다. 자금세탁을 통한 불법자금의 유통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금이동이 발생하므로, 각국의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구조가 불안정하게 되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 급격한 자금이동 때문에 국내외 경제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경제통계가 왜곡되고, 통화정책에도 혼란을 초래하며, 조세 징수 및 공공지출 배분에 있어서 불균형과 비효율을 초래한다.

넷째, 자금세탁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킨다. 미국의 금융범죄정보분석기구는 중대범죄와 자금세탁범죄의 악순환고리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당하고, 경제 및 금융 질서가 교란되어 국가안보 및 국제안보에까지 위협당하고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자금세탁은 국경을 초월하여 각국의 금융기관 및 지하금융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금이동을 하므로, 국제금융시장을 교란하고 각국의 자원배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자금세탁범죄자들은 많은 활동자금을 쉽게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마약류의 제조 및 유통, 테러 등과 연계하여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한다.

다섯째, 자금세탁은 경제금융질서의 왜곡을 초래하고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자금세탁은 금융기관 및 기업체 관계자, 고위공직자, 정치권 인사 등과 은밀한 관계성을 갖고 있으며, 뇌물·횡령·사기·탈세 등의 불법활동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불법자금은 합법자금으로 전환된 후 경제활동에 재투입됨으로써 경제금융질서의 왜곡을 가져온다. 특히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한 금융기관이나 해당 담당자들이 자금세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한 나라의 금융기관 자체가 범죄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자금세탁 범죄는 금융부문을 통한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실물경제부문에서도 비생산적인 활동으로의 자원배분을 초래하고 부패와 범죄를 조장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세탁된 불법자금은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투입되기 보다는 새로운 범죄활동 등 주로 비생산적인 투자에 사용되므로 자금세탁은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여섯째, 대외경제 측면에서 보면,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가 미흡할수록 불법적인 자본해외유출이 늘어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직접투자 등 자본유입은 감소하며 또한 환율과 수출입물품의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 자본의 해외유출에는 정치 및 경제의 불안정, 과도한 세금징수, 부실한 금융기관, 사유재산 보호장치 미흡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자금세탁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부재도 이러한 자본유출을 조장한다. 또한 자금세탁은 범죄 및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의 투자가들이나 금융기관들이 평판리스크 등을 우려하여 자금세탁이 만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투자나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회피하게 되며, 수출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자금을 국내외로 이전하는 방식의 자금세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율이 왜곡되어 교역조건 악화, 국내수요의 수입수요로의 대체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어떤 금융기관이 자금세탁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면 금융기관의 가장 큰 자산인 신인과 평판이 크게 실추되어 지속적인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만일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에 매수되었거나 자금의 불법성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 공모 등의 과실에 따른 감독당국으로부터의 규제와 벌과금 등으로 인해 재산상 손실과 함께 신뢰도와 평판이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객의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생존자체도 위협받을 수 있다.

## 2) 자금세탁 범죄의 규제 필요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세탁 범죄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범죄와 부정부패, 뇌물, 횡령, 사기 및 탈세 등의 불법활동을 조장하고, 금융거래질서를 교란 시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함으로써 국내경제 및 국제경제를 왜곡시키고 나아가 한 나라의 국가안보와 국제안보에도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초기에 각종 불법활동과 조직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수익물 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을 피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자금을 합법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는 효과가 크게 약화되었다. 따라서 각종 전제범죄로부터 획득한 불법자산을 합법자산으로 전환하는 자금세탁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만약 자금세탁을 규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금융시스템을 통한 금융거래는 범죄자들의 불법자산을 합법자산으로 바꾸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불법수익을 위한 범죄는 더욱 양산이 된다. 또한 범죄

자들은 자금세탁을 통해 중대범죄를 자행한 사실과 불법자금 취득 사실을 은폐할 뿐 아니라 불법자금으로 합법적 사업을 했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한 사실을 위장한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중대범죄, 불법자금 취득, 재범죄 등의 범죄 고리를 적발하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범죄자들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가 약한 국가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불법자금을 이동시키고자 하므로, 건실한 국가들의 자본이 부실한 국가로 이동하여 세계자본 배치의 불균형을 일으키며, 세계경제질서를 파괴한다. 따라서 자금세탁 규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경제적 질서의 보호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제범죄로부터 취득한 불법자금을 합법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행위 자체를 불법화하여 범죄로서 처벌하고, 자금세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금융거래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점점증하게 되었다. 자금세탁행위를 불법화하여 범죄로서 처벌하게 되면, 전제범죄 자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죄 확산을 방지하는 데에도 크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금세탁 규제는 부패통제의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테러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자금세탁규제법이 제정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뇌물·탈세 등 부패방지의 측면에서 자금세탁 규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IV.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최근 들어 금융의 통합화 및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자금세탁도 국제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국제적 협력의 일환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및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금세탁 규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규정을 만들었다. 아래에서는 주요 국제기구로서 OECD의 FATF, APG, Egmont Group, 그리고 중요한 국제협약으로서 UN의 비에나 협약, 유럽이사회 협약, FATF의 40개 권고안, EU의 Basel 선언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 1. 자금세탁방지관련 주요 국제기구

###### 1) FATF

OECD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반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1989년 G-7 정상회담에서 정상간 합의에 의하여 설립된 기구

로서 자금세탁기법 및 동향조사,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회원국 상호간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25)</sup> FATF는 자금세탁에 대응하는 정책의 개발과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불법자산이 범죄에 재사용되는 것을 막고, 건전한 경제거래활동에 악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한다. 최근에 FATF는 폐쇄적인 입장을 바꾸어 각 국의 자금세탁방지기구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회원국을 확대하여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말 현재 FATF 회원국은 34개 국가 및 2개 국제기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6년부터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하다가 2009년 정회원이 되었다. FATF는 1990년에 자금세탁 방지대책으로 각국이 취해야 할 40개항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는데(1996년 개정), 이는 현재까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다. FATF는 권고의 준수사항을 참가국 상호간에 점검하기 위한 상호심사, 자금세탁의 추세, 기법,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비회원국들에게 40개 권고안을 채택토록 권고하는 등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대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총회는 2월, 6월, 10월 등 연간 3회,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OECD 본부에서 2회, 회원국에서 1회 개최되며, 연간 1회 자금세탁 유형 및 방지대책에 관한 워크숍이 개최되며, 2011년에는 한국에서 개최되었다.

<표 1> FATF 회원국 현황<sup>26)</sup>

지역	OECD 국가	非OECD 국가	국제기구
유럽 (20)	영국,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European Commission
미주·기타 (7)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아태 (9)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터키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인도	
계 (36)	26	8	2

자료: <http://www.fatf-gafi.org>.

25) FATF: <http://www.fatf-gafi.org>.

26) 2011년 현재 34개국(OECD 국가 26개, 非 OECD 국가 8개), 2개 국제기구로 구성되었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8개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미가입.

## 2) APG

APG(Asia 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는 1995년 4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PEC 재무장관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협력증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97년 2월 FATF 제4차 심포지엄에서 정식으로 발족되었다.<sup>27)</sup> 당초 13개국이 가입의사를 표명했으나, 1998년 제1차 연례회의에서 13개국 외에 한국, 피지, 인도 등 3개국이 추가 가입의사를 밝혀 16개국으로 시작하였다.

APG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국에게 FATF 40개 권고사항을 만족하는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기준의 채택 및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 활동목표로는 효율적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자금세탁의 성격·범위·영향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종합적인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이행 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회원국과 기타 관련국가에 자금세탁에 관한 전문 기술 및 인력제공, APG 총회 및 작업반, FATF 등에 대한 자문 및 보고, 정보교환 및 금융 수사기술의 향상 등 기술적인 지원과 훈련전략 수행, 아태지역 국가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평가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이를 수행하는 등 전 세계적인 자금세탁문제에 대해 지역차원에서 공동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무국은 호주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8년 3월에 일본에서 제1차 연차총회가 개최된 후, 2011년 7월 인도에서 제14차 연차총회가 열렸다. 제14차 연차총회에서는 6개의 상호평가보고서가 채택되었고, 부탄왕국이 41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UN이 정식으로 옵서버 국제기구로 가입하게 되었다. 2011년 현재 APG에는 41개 회원국, 5개 옵서버 국가 및 24개 옵서버 국제기구가 있다.<sup>28)</sup>

## 3) 에그몽 그룹

에그몽 그룹(Egmont Group)은 1995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전 세계 금융정보분석기구(FIU) 회의에서 설립되었다.<sup>29)</sup> 주요 목적은 각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 간 국제적 협력 증진과 금융정보분석기구의 신규 설립을 지원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FATF와 더불어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대책의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며, 금융정보분석기구 간 정보교환원칙을 제정하여 서로 성격이 다른 금융정보분석기구 간에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국 간에 다양한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에그몽 그룹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1) 의심거래보고제도 도입, (2) 국내의

27) APG: <http://www.apgml.org>.

28) APG(2011), "APG Annual Report 2010-2011".

29) Egmont Group, <http://www.egmontgroup.org>.

법 또는 규정에 의한 금융정보보고체계 확립, (3) 자금세탁관련 금융정보분석기구(FIU) 설립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1995년 가입국이 13개국에서 2010년 120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한국은 2002년 6월에 가입하였다. 대륙별 회원국 분포를 보면, 아프리카 8개국, 아메리카 32개국, 아시아 21개국, 유럽 52개국, 오세아니아 7개국 등이다. 또한 6월경 연간 1회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동 기간 동안 Plenary Meeting of Heads of FIU, Egmont Committee,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며, 3월, 11월경에 Egmont Committee와 Working Group 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회원국 FIU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Workshop이나 훈련세미나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sup>30)</sup>

#### 4) 기타 국제기구

국제통화기금(IMF)<sup>31)</sup>과 세계은행(IBRD)<sup>32)</sup>은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하고 있는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차단 분야를 이 프로그램의 평가대상에 새로 포함하여 각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평가실시 및 시정을 권고하며, FATF 상호평가와 국제통화기금 금융부문평가를 동시에 적용하므로, 각국의 자금세탁 이행수준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인 평가영역으로 건전성규제부문(은행, 증권, 보험), 건전성비규제부문(환전영업자, 신탁 회사 등), 법집행부문에 구분하여 규정, 기관역량, 규정이행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평가기준의 요소로서 (1) 사법상 조치 및 국제협력 영역에서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범죄화, 범죄수익 및 테러자금조달에 사용된 재산의 몰수, FIU 및 정보의 국내외적 수집·분석·제공, 법집행기관 및 기소당국의 권한과 의무, 국제협력의 측면이 있으며, (2) 금융기관에 대한 예방조치 영역에서 고객확인, 계좌와 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록보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내부통제, 법규준수 및 감사, 건전성 기준, 감독기관과 기타 관계당국 간 협력의 측면이 있다.

볼프스버그 그룹(Wolfsberg Group)은 1998년 설립된 민간 은행들의 연합체로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대표적인 단체이다.<sup>33)</sup> Banco Santander, Banks of Tokyo-Mitsubishi UFI, Barclays, Citigroup, Credit Suisse, Deutsche Bank, HSBC, J.P. Morgan Chase, Societe Generale, UBS 등 11개 국제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년 프라이빗뱅킹의 건전한 사업수행을 위한 중요한 국제지침인 '프라이빗뱅킹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원칙',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에 관한 성명

30) Egmont Group(2010), "Annual Report June 2009 - July 2010".

31) Internal Monetary Fund, <http://www.imf.org>.

32)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33) <http://www.wolfsberg-principles.com>.

서', '환거래 은행업무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원칙' 등을 발표한데 이어 2003년 9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심사와 검색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006년 '뮤추얼 펀드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지침'과 '자금세탁 위험관리를 위한 지침'을 발표하고, 2009년 '신용카드 및 상품구입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지침'과 '지폐에 관한 모니터링, 심사와 검색' 등의 발표를 통해 자금세탁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방식을 강조하였다. 또한 2007년 '부패 대응 방안', 2011년 '반부패 지침' 등을 통해 금융기관 내에서 부패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안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자금세탁방지기구 외에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APG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카리브지역(CFATF), 동유럽지역(MONEYVAL), 동남아프리카지역(ESAAMLG), 남미지역(GAFISUD), 유라시아지역(EAG), 서아프리카지역(GIABA), 중동북아프리카지역(MENA) 등 지역별 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각 지역에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2. 자금세탁방지관련 주요 국제협약

### 1)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UN 협약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UN협약(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은 1988년 12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채택되어 1990년 11월에 발효되었다. 일명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으로 불리는 이 국제협약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각종 국제협약 및 권고안 등의 기초가 되는 핵심 국제규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1999년 8월 현재 154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동 협약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물질 관련 범죄와 연관된 자금세탁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동 범죄수익을 몰수토록 하고 있으며, 협약 체결국간 자금세탁에 대한 수사기관의 공조 및 관련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비엔나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1998년 12월 이 국제협약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 2) 유럽이사회 범죄수익규제협약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유럽이사회 협약<sup>34)</sup>은 23개 유럽국가로 구성된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에 의하여 1990년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비엔나 협약과는 달리

34) Convention on Laundering, Search, Seizure and Confiscation of Proceeds from Crime, 1990.

자금세탁행위의 기준범죄를 마약관련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불법수익이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으로 몰수를 위한 조사 및 보전조치, 자금세탁범죄의 정의 등 국내적 차원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협약은 일명 '자금세탁협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동 협약은 1991년 '자금세탁을 위한 금융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였고, 1993년 동 지침의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령을 제정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자금세탁방지법령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특히 금융기관의 고객확인 의무, 5년 이상의 금융거래 기록보관,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거래보고, 금융기관 등의 내부통제 절차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1999년 7월 마약밀매, 테러, 밀수 등의 범죄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비금융부문의 금융활동도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출한 후 2001년 9월 승인되어 발효되었고, 2005년 5월 국제적 규모의 자금세탁에 대한 국내 조치, 국제공조 및 FIU 사이의 협력, 감시장치, 분쟁해결 등을 규정한 새 협약을 제출하였다.

### 3) 바젤 원칙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1988년 12월에 채택하고 1992년에 발표된 바젤선언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은행시스템이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들이 유의해야 할 4가지 원칙을 발표하였다.<sup>35)</sup> 주요 내용은 은행의 고객확인 의무, 자금거래와 관련한 법규 준수 및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지원거절, 고객비밀보호 관련 법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동 원칙준수와 관련된 내부절차 수립 등이다. 동 원칙은 비록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 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각국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행정적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 은행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고 있다.

또한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안전성·건전성 및 은행시스템의 완전성(integrity)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1년 10월 은행의 고객주의의무 관련 보고서(Customer due diligence for banks)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FATF의 40개 권고사항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

### 4) FATF 40개 권고사항

OECD의 FATF가 1990년 제정한 국제적 기준으로 현재 34개국, 2개 국제기구 등 36개 회원국을 포함한 약 180여 국가에서 자금세탁 방지업무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하

35) Basel Statement of Principles, 1988.

고 있다.<sup>36)</sup> 동 기준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각국의 법률제도에 포함될 내용, 금융기관의 역할, 국제적 협력강화 부문에서의 권고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동 권고사항은 회원국의 입법조치를 지원하는 국제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FATF 회원국의 이행약속,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지정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한다.

한편 FATF는 2003년 6월 40개 권고사항을 개정하여 자금세탁과 관련된 필수 전제 범죄의 범위를 조직범죄, 테러범죄 등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고객주의의무를 대폭 강화하였다.

### 5) 볼프스버그 자금세탁방지 준칙

12개 선진은행들의 모임인 볼프스버그 그룹이 제정한 준칙<sup>37)</sup>으로 프라이빗 은행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고객주의의무에 대한 지침(Global AML Guidelines for Private Banking, 2000)과 환거래 은행업무(Correspondent Banking)와 관련된 거래은행주의의무에 대한 준칙(AML Principles for Correspondent Banking, 2002)이 있으며, 금융기관에서의 부패방지를 위한 준칙을 2007년에 제안한 후(Statement against Corruption, 2007), 2011년에는 국제 투명성과 바젤 원칙을 규제측면에서 강화된 지침을 내놓았다(Anti-Corruption Guidance, 2011).

## V.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기구<sup>38)</sup>

### 1.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1993년 8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에 근거를 두는 금융실명제로부터 비롯되었다. 1995년 1월에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마침내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된 것은 1995년 12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공포되면서 마약류 범죄에 관한 불법자금의 세탁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이다.

금융의 자유화 및 개방화로 외환거래가 자유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적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1990년대 말부터 UN과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자금세탁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처를 위한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권고를 받아들

36) FATF(1990),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40 Recommendations」, 관세청(2001), 「자금세탁의 이해와 조사방법」.

37) Wolfsberg Anti-Money Laundering Principles.

38) 이 부분은 금융정보분석원(2011)과 김철수(2011) 등을 많이 참조하였다.

여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1년 1월 1일 외환자유화조치 시행으로 불법자금의 국내유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세계적인 금융환경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9월 「특정 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들 법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은 혐의금융거래와 고액현금거래 보고, 내부보고체제 구축, 업무지침 작성, 자금세탁방지업무관련 교육,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었으며, 2001년 11월부터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KoFIU)이 설립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관련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본격적인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2008년 12월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협박 자금조달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도 갖추게 되었다.

## 2. 자금세탁방지제 주요 법령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 법령은 범죄수익 등의 몰수 및 추징과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한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특정 금융거래보고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류범죄에 적극 대처하고 1988년 비엔나 협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동 법률은 일본의 1992년 마약 특례법을 상당부분 벤치마킹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그 주요 골자는 마약범죄 혐의자의 입국 및 마약류 혐의 화물의 반입, 영리목적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불법수익 등의 가장, 은닉, 또는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금융기관의 신고제도, 불법수익 등의 몰수, 추징의 특례, 국제공조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을 가장,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 등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골자는 특정범죄 및 범죄수익 등의 정의, 범죄수익 등의 은닉, 가장 및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금융기관 종사자의 신고의무, 범죄수익 등의 몰수, 추징의 특례, 그리고 국제공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조직범죄, 거액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36종의 특정범죄로부터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 가장행위(자금세탁행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 추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규제하여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골자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의심거래보고제도의 도입, 금융기관 내부보고시스템의 구축,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외국의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교환,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 및 내부보고시스템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 및 검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심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의심거래 중 원화 2천만 원, 외화 1만 달러 이상인 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 3.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체계와 기구

우리나라의 공식 자금세탁방지 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KoFIU)<sup>39)</sup>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의거 2001년 11월에 재정경제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업무영역도 테러자금조달방지업무까지 확대하였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관세청·경찰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심거래 등 관련 자료를 심사, 분석하여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의 의심거래보고, 내부보고시스템 구축현황 등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 및 교육, 홍보를 하며,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 및 국제기구와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포털 시스템, 룰/스코어링 시스템, 통합연계분석 시스템, 정보 입수·제공 시스템 등을 통해 금융기관 등의 의심거래보고를 전자파일로 접수하여 자금세탁 혐의도를 자동분류하고, 상세분석 대상을 추출한다. 분석 대상은 기초분석 및 배당을 수행한 후 전략적 심사분석<sup>40)</sup>을 위해 이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전략적 심사분석을 수행하고, 심사분석한 의심거래 정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한 에그몽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정보교환 시스템을 통해 외국 FIU와의 정보교환도 지원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02년부터 'FIU 정보화시스템'을 7단계에 걸쳐 구축하여, 금융정보분석원·금융기관·법집행기관의 종합적 정보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되는 모든 자료는 암호화되어 금융정보분석원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여 분석되고 있으며, 전략적 심사분석 등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금융기관의 정보화시스템은 고객확인 시스템, 거래모니터링 시스템, 위험평가 시스템, 보고체계 시스템

39) <http://www.kofiu.go.kr>.

40) 전략분석에는 고객현금거래보고, 외환거래보고, 지급수단수출입자료, 신용불량정보 등이 활용된다.

등을 통해 고객·상품·서비스를 관리하고, 의심거래를 추출하여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서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융기관은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에 대한 위험기반 고객확인 의무, 자금세탁 위험평가,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을 관리하며, 위험기반 거래 모니터링은 의심거래를 추출하여 고객·거래 위험평가를 수행하고 의심거래를 점검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그림 1>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체계



자료: 금융정보분석원(2011) “자금세탁방지 2010년도 연차보고서”.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의심거래정보 등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접수하게 되면 자체 설계한 FIU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세탁위험성에 대한 다각적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범죄 연관성이 포착된 거래에 대하여 관련 법집행기관에 의심거래보고서의 통계 및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조치를 의뢰한다.

<표 2> 의심거래보고 분석·제공 현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보고 건수	275	1744	4,680	13,459	24,149	52,474	92,093	136,282	236,068	561,224
분석 건수	208	1,252	4,272	5,846	6,598	7,270	11,246	13,053	19,012	68,757
제공 건수	104	432	995	1,799	2,267	2,331	5,234	7,711	11,868	32,741

자료: 금융정보분석원(2011) “자금세탁방지 2010년도 연차보고서”.

참고로 <표 2>에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관련 자료보고 및 조치실적을 보면, 2002년부터 2010년 말까지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는 총 누적 561,204건이 접수되어 이 중 68,757건이 정밀 분석되었고, 법집행기관에는 최종적으로 32,741건이 제공되었다. 이 중 수사·조사 종결된 17,317건 중 최종적으로 자금세탁 혐의가 발견된 것은 10,617건이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조세포탈이 가장 많은데, 이는 국세청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한 것과 연관성이 크다. 의심거래정보의 범죄유형 중 조세포탈은 자금세탁방지의 요주의 항목으로써 지속적인 관리 분석이 필요하다.<sup>41)</sup>

## VI.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과 과제

### 1.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무역기반 자금세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금세탁행위가 금융거래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자금세탁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노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당국도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금융기관에 일정한 의무와 책임을 부가하고 있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제도는 2001년 시행된 「범죄수익규제법」에 근거한 자금세탁의 범죄화<sup>42)</sup>와 2006년 시행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근거한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고객확인제도, 2008년 시행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등이다. 이러한 법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고객을 일일이 확인하고,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sup>43)</sup>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System)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 불법자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주체는 금융기관이며, 금융기관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는 일정금액 이상

41) 금융정보분석원(2011) “자금세탁방지 2010년도 연차보고서”.

42) 자금세탁의 범죄화(Criminalization of Money Laundering)란 자금세탁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43) 이 부분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2010년도 연차보고서(2011)”을 많이 참고하였다.

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한 제도이다. 1일 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사유를 적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제도와는 구별된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금액 이상 현금거래를 자동적으로 보고토록 하여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란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실지명(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토록 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이 이렇게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자신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합당한 주의'로서 취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의무사항이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입장에서 자신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범죄자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으로 '고객알기정책(Know Your Customer Policy)'으로 불리기도 한다.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nhanced Due Diligence)란 고객별, 상품별 자금세탁위험도를 분류하고 자금세탁위험이 큰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 확인 등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을 하는 제도로서, 2008년 12월 시행되었다. 금융기관은 고객과 거래유형에 따른 자금세탁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확인에 수반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반면, 고위험 고객 또는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세탁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험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에 기초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또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 따라 허가 없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게 되어 있다. 또한 금융기관 등의 종사자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의심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및 고객확인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고려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 각 금융기관은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수립하고, 각 자료의 보고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관련 자료의 효과적인 수집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외에도 보고의무를 담당할 보고책임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체계의 구축,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자금세탁행위 방지

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2. 자금세탁방지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과제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02년부터 'FIU 정보화시스템'을 7단계에 걸쳐 구축하여, 금융정보분석원·금융기관·법집행기관의 종합적 정보시스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금융기관의 정보화시스템은 위험기반 고객확인 시스템, 거래모니터링 시스템, 위험평가 시스템, 보고체계 시스템 등을 통해 고객·상품·서비스를 관리하고, 의심거래를 추출하여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서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금세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금융기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선진 정보시스템에 기반을 둔 자금세탁방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아직까지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금융기관은 전사적인 수준이 아닌 일부 담당부서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정에 쫓긴 나머지 국내 금융환경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해외 시스템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외환은행은 외환전문은행으로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의 대외 신용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자금세탁방지법 추진에 발맞추어 2007년 5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맨타스 AML'<sup>44)</sup>을 도입하여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또한 신한, 농협, 국민 등 다른 많은 은행들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은행이외에 증권, 보험사는 아직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내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전행적인 자금세탁방지 전략에 근거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지 못하고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금세탁 방지 리스크에 법적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업무구성으로 의심거래 보고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 대부분 창구에서 고객을 대면하는 직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의심거래를 파악하는 등 단순한 의심거래 유형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금융기관

44) 국내 요구 사항을 반영해 현지화하고, 규제 당국인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보고 요구 사항을 금융기관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제품이며, 거래 활동 프로파일링을 활용해 활동 변화가 개입될 경우 활동 관찰 능력을 향상시키며, 프로파일 속성은 계정 및 고객과 관련해 수집된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다.

의 선진화된 정보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일 대량거래가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수작업에 의한 단순통계로 비정상거래를 적발하고 상세 분석하여 의심거래로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선진정보시스템과 도입과 함께 자금세탁방지업무 전담인원과 조직을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무혐의 거래를 불필요하게 의심거래에 포함시켜 보고하는 것을 지양하고, 혐의 있는 거래를 하나라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반업무를 리스크관리체제에 포함시켜 전사적인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 Ⅶ.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9월에 자금세탁방지 기본 법률인 「범죄수익규제법」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이 2001년 11월에 설립되어 2011년 11월에 출범 10주년을 맞이했다. 2005년 1월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와 고객확인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12월에는 강화된 고객확인제도와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조달금지제도가 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공조에도 크게 기여하여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였다. 2002년 7월부터 2년 동안 APG의 공동의장직을 수행하였고, 2004년 6월에는 제 7차 APG 연차총회를, 2008년 5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에그몽 그룹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2009년 10월 제21기 제 1차 FATF 총회에서 FATF 정회원으로 가입하였다. 2011년 12월에는 APG와 FATF가 합동으로 개최한 ‘자금세탁방지 부산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은 2002년부터 단계적인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서 작성, 접수, 분류, 심사, 분석, 법집행기관 제공의 전 과정을 정보화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2008년에는 금융기관까지 정보화시스템을 확대하여 고객확인업무, 의심거래 모니터링 및 판단,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자금세탁관련 기본법체제를 정비하고,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업무 수행에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양적인 측면에서 자금세탁방지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는 겨우 마련되었으나,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많다.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금세탁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치윤리와 기업윤리가 먼저 정착되어야 하겠지만, 이에겐 긴 시간이 요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거래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금융기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금융기관들이 최신 정보시스템에 기반을 둔 자금세탁방지체제를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했으며, 일개부서나 창구부서 직원들만이 자금세탁방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극적인 대응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금융 윤리성의 정립도 요원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선 금융기관들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자금세탁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정리해 본다.

첫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일대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금융의 윤리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범죄로부터 획득한 불법자금이 금융거래를 통해 합법자금으로 전환되면, 이것이 새로운 범죄를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금융질서와 나아가 사회경제질서가 송두리째 파괴된다. 어떤 나라에서 자금세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그 나라는 신인도가 크게 실추되어 많은 국가들이 그 나라와의 국제적인 금융거래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금융기관이 자금세탁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면, 금융기관의 가장 큰 자산인 신인과 평판이 실추되어 지속적인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특히 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에 직접 연관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훼손에 따른 부실화, 감독당국으로부터의 규제와 벌과금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물론 신뢰도와 평판이 크게 하락하게 되어 고객의 이탈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그 금융기관의 생존 자체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금융기관의 사활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전사적인 조직차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기관은 이러한 인식전환과 함께 무엇보다도 먼저 선진화된 금융정보화시스템에 기반을 둔 완벽한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자금세탁방지체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와 금융환경에 맞는, 특히 현금선호도가 높은 우리나라 금융거래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자금세탁 위험평가모델, 의심거래 검출모델, 변동거래 모델 등 다양한 업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모델을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실제 적용할 때 비로소 금융기관의 의심거래정보와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을 통해 양질의 정보 취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양질의 정보를 기반으로 불법적 거래의 징후를 찾아내고, 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특히 정보화시스템의 처리능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정보화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조직과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사적인 차원의 조직이 리스크관리담당 임원의 책임 하에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전담하는 전문가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담자는 정보화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되는 자금세탁의 유형을 잘 숙지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문책임조직과 전문가가 확보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운용될 개연성이 크다. 감사원이 2007년 11월 실시한 자금세탁방지대책 추진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많은 금융기관들이 자

금세탁방지시스템을 형식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정상적인 고객의 거래로 판단한 경우에도 점검대상에 제외되지 않고 의심거래 추출조건도 비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너무 많은 거래가 불필요하게 점검대상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수집한 정보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금융기관은 고객, 상품, 서비스,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항목을 잘 구분하고, 위험항목의 위험정도에 따른 감시체제를 차등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최적의 감시체제를 갖추어 자금세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금융거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수표거래, 계좌이체, 현금거래 등의 금융거래에서 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등에서 확인할 위험항목을 좀 더 과학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확인대상, 확인내용 및 추가 확인 항목들의 연관성을 규정하고, 의심거래의 횟수를 수치화하여 위험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출된 위험지표를 토대로 감시체제의 가동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

다섯째, 금융기관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모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좀 더 높여야 한다. 아직도 금융기관은 자체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거액의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에게는 경쟁적으로 과다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유치를 위해 불투명 거래를 묵인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계좌개설을 할 때는 정해진 법규에 따라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이 금융기관의 예치와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투명하게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사태가 야기되었다. 자금세탁은 금융전문가나 금융기관의 직원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범죄에 가담하는 금융전문가들은 금융거래의 불투명성을 이용하여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여섯째, 자금세탁의 범죄성 및 위해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자금세탁은 불법자산이 합법자산으로 전환된 후로는 추적이 어렵고, 고액의 수수료가 보장되므로, 금융전문가들이나 금융기관 직원들은 자금세탁에 대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금세탁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불법거래이기 때문에, 당사자 외에는 적발하기 어려우므로 그들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곱째, 자금세탁의 전제범죄에 대한 확대 및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이상 등에 의한 고위험 거래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 자금세탁범죄 유형 중 조세포탈의 범죄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45)</sup> 이에 자금세탁 전제범죄에 조세범죄를 추가하고 자금세탁 목적으로 이용되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이상 등의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위험평가가 높게 나오면, 곧바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45) 금융정보분석원(2011) “자금세탁방지 2010년도 연차보고서”.

여덟째, 국제협력을 통한 각국 간 금융기관 제휴 확대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의 업무확대를 위한 개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 최근 국제사회의 현안과제에 대한 정보소통과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 각국은 통상 자국의 상호평가시점까지 개정된 FATF 권고사항에 맞추어 자금세탁방지 법령 및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2012년 2월에 국회에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루어졌으며, 스위스 의회도 2012년 7월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국가 간 조세조약이 발효되면 양국 국세청이 탈세를 목적으로 상대 국가 은행을 이용한 경우 탈세혐의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의 계좌정보를 제공받아, 자금세탁범죄를 색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직을 확대하고, 심사분석, 감독·검사, 국제협력 등의 업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직은 2실 5과로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국가보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자금세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관들은 타 법집행기관에서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로 파견 나온 직원들이 많으며, 이들은 파견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되돌아간다.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자금세탁의 방법이 다양하게 진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심사분석관 인원으로는 원활하게 전문심사분석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심사분석관으로 인해 일관성 있는 심사관리 운영과 노하우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심사분석 업무를 장기간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의 확대와 요원 양성이 필수적이다.

## VIII. 결론

세계경제의 통합화, 글로벌화로 인해 국가 간의 금융거래의 규모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금융거래를 이용한 마약밀수 거래, 불법무기 거래, 테러 등에 기인하는 불법자금의 국가 간 이동도 확산일로에 있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빈번하게 발생하는 테러 등으로 국가 안보와 금융시스템이 새로운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세계정세로 인해 국가안보 및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증가하는 시점에, 각국 정부는 새로운 위협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방어시스템을 미리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각국은 이러한 세계금융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불법자금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과 정보시스템을 더 면밀하게 설계하고, UN, OECD 등의 국제적 공조체제에 합류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FATF 제4차 라운드 국제기준 개정에 의한 권고사항은 테러자금조달금지와 확산금융 관련 정밀 금융제재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정밀화된 금융제재제도까지 논의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관련 법률이 시행되고 주관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이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의 협조와 함께 선진 정보시스템에 기반을 둔 자금세탁방지체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 자금세탁방지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는 겨우 마련되었으나,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질적인 측면에서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금세탁범죄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금융기관은 선진 정보시스템에 기반을 둔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거래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금융기관이 금융의 윤리성을 정립하고, 정해진 법규에 따라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FATF 제4차 라운드 국제기준 개정에 의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현행 관련 법령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범죄수익규제법」,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등의 법령에 개선된 새로운 항목들을 첨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지속적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부단한 노력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차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도 크게 활성화 되어야 하며,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금융위원회(2011), “자금세탁방지 부산 국제회의 개최 결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1.11.
- 금융정보분석원(2007), “자금세탁방지 2006년도 연차보고서”.
- 금융정보분석원(2008), “자금세탁방지 2007년도 연차보고서”.
- 금융정보분석원(2009), “자금세탁방지 2008년도 연차보고서”.
- 금융정보분석원(2010), “자금세탁방지 2009년도 연차보고서”.
- 금융정보분석원(2011), “자금세탁방지 2010년도 연차보고서”.
- 김두현(2008), 『국제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만석(2010),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철수(2011), 『우리나라 무역기반 자금세탁의 효율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영화(2011),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관한 일고찰”, 『한국테러학회보』 제4권 제1호.
- 안형도(2002), “주요국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고찰과 그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4호.
- 이병기·이경재(1994), “돈세탁행위의 범죄화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93-22.
- 장준오(1999), “90년대 돈세탁: 국제적 추세와 국내 실태”, 형사정책연구원.
- 조성길(2008),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이해』,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은행(2004),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주요내용”, 업무참고자료 2004 - 3.
- APG: <http://www.apgml.org>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 APG(2011), “APG Annual Report 2010-2011”.
- AUSTRAC(2011) Annual Report 2010-2011,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lia.
- Egmont Group(2010), “Annual Report June 2009 - July 2010”.
- FATF: <http://www.fatf-gafi.org>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 KoFIU: <http://www.kofiu.go.kr> (한국 금융정보분석원).

투고일자 : 2012. 08. 14

수정일자 : 2012. 09. 16

게재일자 : 2012. 09. 25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방지제도와 정책과제  
-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

함정호(인천대)·김두환(인천대)

자금세탁은 마약, 밀수, 뇌물 등 전제범죄로부터 획득한 불법수익을 합법자산으로 위장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자금세탁은 최근 세계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와 통합화에 따라 국제간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전환된 범죄자금은 또 다른 조직범죄의 원천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의 규제는 여타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러한 자금세탁 규제를 위해서는 자국의 법제 제정 및 해당기구 설립 등의 노력뿐만 아니라 각 국가 간 긴밀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자금세탁의 개념과 영향에 대해 살펴본 다음, 자금세탁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적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역할과 노력을 논의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규제를 위한 법과 규정을 살펴본 후, 실제 일선에서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역할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주제어 : 자금세탁,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기관